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8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08.
3. 회 부 일 : 2024. 11.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56조제3항 등).

### Ⅲ. 검토의견

#### 1.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56조제3항제1호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생략)                                                                        |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②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화재 등의 통지를 받는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② (생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제56조(과태료) ① · ② (생략)                                                                         | 제5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
| <u>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 <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
|                                                                                              | <u>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u>                                        |

|                                                                                                                        |                                                                                                                                                                                                                                                                                |
|------------------------------------------------------------------------------------------------------------------------|--------------------------------------------------------------------------------------------------------------------------------------------------------------------------------------------------------------------------------------------------------------------------------|
| <p>④ (생 략)</p> <p>제57조(과태료) ① <u>제19조제2항에</u>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생 략)</p> | <p><u>업무를 방해한 자</u></p> <p>2. <u>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7조(과태료) ① <u>제19조제3항에</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9조제1항),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6조제1항제1호)<sup>1)</sup>.

1)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현행법령에 따른 거짓신고 과태료 처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 1회         | 2회  | 3회  |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56조 제1항<br>-시행령 [별표3] | 200        | 400 | 500 |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의 행동<sup>2)</sup>으로 화재 등의 통지를 받는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5년간의 119접수센터<sup>3)</sup>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총 신고 건수 67,987,719건 중 장난이나 거짓의 신고 건수가 6,146건으로 전체의 0.009%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로 소방청은 신고 관련 통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거짓신고와 장

2) 소방청은 “못된 장난 등의 행동”의 예시로 장난 전화, 화재가 나지 않았음에도 화재가 났다는 거짓 신고, 긴급상황과 관계 없는 전화, 오접속, 무응답 등을 들고 있음.

3)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119긴급신고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신고를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거짓신고’로 구분하고 긴급상황과 관계없거나 명백히 출동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난신고’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장난신고와 거짓신고는 출동력 관리를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일 뿐 법률 상으로는 장난신고도 거짓신고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음.

#### <최근 5년 간 119 상황실 신고 건수 현황>

|                          | 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9월    |
|--------------------------|------------|------------|------------|------------|------------|------------|------------|
| 전체 신고건수(A)               | 67,987,719 | 11,567,173 | 11,274,559 | 12,075,804 | 12,546,469 | 11,956,459 | 8,567,255* |
| B+C (=D)                 | 6,146      | 1,337      | 1,403      | 1,203      | 1,250      | 729        | 224        |
| %(D/A)                   | 0.0090     | 0.0116     | 0.0124     | 0.0100     | 0.0100     | 0.0061     | 0.0026     |
| 장난 <sup>4)</sup> 신고건수(B) | 2,039      | 407        | 665        | 249        | 264        | 352        | 102*       |
| %(B/A)                   | 0.0030     | 0.0035     | 0.0059     | 0.0021     | 0.0021     | 0.0029     | 0.0012     |
| 거짓 <sup>5)</sup> 신고건수(C) | 4,107      | 930        | 738        | 954        | 986        | 377        | 122**      |
| %(C/A)                   | 0.0060     | 0.0080     | 0.0065     | 0.0079     | 0.0079     | 0.0032     | 0.0014     |

\* 2024년 9월 기준

\*\* 2024년 6월 기준

(자료: 소방청)

4) 소방청에 따르면 장난 신고란 긴급상황과 관계없거나 명백히 출동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

예) 장난신고 : “내 마음에 불이 났어요”하거나 긴급성과 무관한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

5) 소방청에 따르면 거짓 신고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함.

예) 거짓신고 : 불이 나지 않았는데 불이 났다고 신고

전체 신고 건 수 중 장난신고를 포함한 거짓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으나 이러한 장난이나 거짓 신고로 인해 긴박한 화재나 구조·구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구조에 지장을 준다는 측면에서

못된 장난 등의 행동으로 화재 등의 통지를 하여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 체계에서도 장난 등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통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장난 등의 행위는 거짓 행위에 포함이 되는 데, 거짓 행위로 소방력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규정을 살펴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고(제4조제3항), 이를 위반해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하고 있고(제30조제1항),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4조제2항), 이를 위반해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7조제1항).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는 ①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제3조제2항제3호), ②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제3조제3항 제2호),

고의·상습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제137조) 또는 업무방해죄(제314조)를 적용할 수도 있음.

#### <현행 법률 상의 거짓신고 관련 제재규정(예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119항공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

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청은 장난신고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거짓 신고에 포함되고 범적용상 두 표현은 동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설령 문언상 다르게 해석된다 할지라도 양자는 대등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전자는 후자에 포함되는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51 |

## 참고

## 119 거짓 신고자 과태료 부과 현황

2019년 이후 거짓으로 119에 신고한 사람(장난 신고 포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거짓신고 건수 6,146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전체 거짓 신고 건수의 0.47%인 29건으로 나타나,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19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 구분           | 합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 6월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거짓신고 건수(A)   | 6,146 |        | 1,337 |        | 1,403 |       | 1,203 |       | 1,250 |    | 729   |        | 224     |       |
| B/A(%)       | 0.47  |        | 0.97  |        | 0.28  |       | 0.33  |       | 0.0   |    | 0.96  |        | 0.45    |       |
| 과태료 부과 건수(B) | 29    | 39,300 | 13    | 12,500 | 4     | 5,000 | 4     | 7,000 | -     | -  | 7     | 12,800 | 1       | 2,000 |
| -화재          | 17    | 23,000 | 8     | 8,000  | 3     | 3,000 | 2     | 4,000 | (없음)  |    | 3     | 6,000  | 1       | 2,000 |
| -구조          | 1     | 1,000  | -     | -      | -     | -     | 1     | 1,000 | -     | -  | -     | -      | -       | -     |
| -구급          | 11    | 15,300 | 5     | 4,500  | 1     | 2,000 | 1     | 2,000 | -     | -  | 4     | 6,800  | -       | -     |

(자료: 소방청)

이와 관련해서, 소방청은 장난 신고의 경우 119상황관리 표준대응매뉴얼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고, 거짓 신고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의 과태

료 부과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장난 신고를 포함한 거짓 신고의 경우 ① 오인 신고와 거짓 신고를 구분하기 어렵고, ② 신고자 추적이 불가능한 공중전화, 정지된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소방청의 장난 신고 및 거짓 신고 대처 매뉴얼(예시)>

《장난전화 관련 매뉴얼》

- 장난전화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시간의 대화를 피하고 관계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경각심을 주고 반복적으로 장난전화가 지속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한다.

《허위신고 처리 절차(예)》

-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상황실) → 현장출동 후 상황판단\*(출동대) → 허위신고 적발\*\*(출동대) → 과태료 부과(특사경팀)
  - \* 허위신고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 신원 확인
  - \*\* 허위신고자 인적사항, 현장활동 자료(일지) 등을 소방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에 인계